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3월 16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3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(2003.12.30, 법률 제7013호)됨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
- 취득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가.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(제8조)
- 나.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도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의2 신설)

다.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(제24조, 제48조, 제67조, 제78조)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지방세법의 개정(2003.12.30, 법률 제07013호)으로,
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우편법시행규칙
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개선하고,

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
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,
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
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각 적용하고,
취득세의 신고기한 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50%를
경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

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
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
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(2003.12.31, 행정자치부령
제00213호)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